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「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」 제34조, 제35조,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(자격취소)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3. 12. 7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명: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2. 근거: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, 제35조,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송달 대상: 허○행('62. 10. 9.), 노○용('57. 8. 12.)
4. 송달 내용: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
5. 공고 기간: 2023. 12. 7.~2023. 12. 22.(14일간)
6.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김태은주무관(043-460-46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